

#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1.7.4.

1차 개정: 2020.7.6.

2차 개정: 2021.3.22.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용어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뜻하며, 이에는 내용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등이 포함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를 중복하여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② '제보자'라 함은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한노인재활의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 2 장 연구 윤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4조(기능) 위원회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이하 '본학회'라고 한다) 회원의 연구 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 윤리 위반 검증, 검증 결과 처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이 수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조사 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①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3 장 연구 윤리 위반 검증

#### 제8조(부정 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제9조(부정 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 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한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2조(기피, 제척, 회피)

- ①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3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한다.

#### 제14조(판정)

- ①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 제 4 장 후속조치

#### 제15조(후속조치)

- ① 연구부정 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단순한 실수로 인정될 때 교육적인 주의서한 발송
  2. 재발 방지를 위한 견책, 경고 서한
  3. 중복 출간, 또는 표절을 해당 학술지에 고시
  4. 논문 철회 또는 일정기간 본 학술지 투고 금지
  5. 타 학술지 또는 색인기관에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 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 수록권(호), 취소 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①항 제4호의 논문 철회 또는 투고 정지기간은 부정 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한다.

#### 제17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명예회복 등 후속 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 이사회에 보고해야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2011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